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된 법률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안 제9조).

수정주요내용

가.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호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7호(개정안 제9조제6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제2호 신설 및 같은 조 제7호).

나.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된 법률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3호·제5호·제6호·제8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3호(개정안 제9조제2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근대문화유산법”을 각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5호(개정안 제9조제4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무형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무형유산법”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6호(개정안 제9조제5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문화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문화유산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7호(개정안 제9조제6호) 중 “제9조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을 삭제한다.

안 제9조제8호(개정안 제9조제7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자연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중 “자연유산법”을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u> 1. (개정안과 같음) 2. <u>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u> 3.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u>

	<u>에 관한 법률」</u> <u>(이하 이 호에서</u> <u>“근현대문화유산</u> <u>법”이라 한다)에</u> <u>따른 다음 각 목의</u> <u>사항</u>	<u>용에 관한 법률」</u> ----- ----- ----- ----- --
	<u>가.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6조</u> <u>제1항 및 제25</u> <u>조제1항에 따</u> <u>른 국가등록문</u> <u>화 유 산 (같 은</u> <u>법 제2조제2호</u> <u>가목에 따른</u> <u>국가등록문화</u> <u>유산을 말한다.</u> <u>이하 같다)의</u> <u>등록 및 등록</u> <u>의 말소</u>	<u>가.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u> - ----- ----- ----- ----- ----- ----- ----- -----
	<u>나.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8조</u> <u>에 따른 필수</u> <u>보존요소의 지</u> <u>정, 지정의 변</u> <u>경 및 해제</u>	<u>나.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u> - ----- -----
	<u>다. 근현대문화</u>	<u>다. 「근현대문</u>

	<u>유산법 제27조</u> <u>에 따른 국가</u> <u>등록문화유산</u> <u>의 국외 반출</u> <u>허가 및 반출</u> <u>기간의 연장</u> <u>허가</u> 라. <u>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33조</u> <u>제1항에 따른</u> <u>근현대문화유</u> <u>산지구의 지정</u> <u>과 같은 법 제3</u> <u>4조제1항에 따</u> <u>른 그 구역의</u> <u>변경 및 지정</u> <u>의 해제</u> 마. <u>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44조</u> <u>및 제47조에</u> <u>따른 예비문화</u> <u>유산의 선정</u> <u>및 선정 취소</u> 3. 「<u>매장유산 보호</u> <u>및 조사에 관한 법</u> <u>률</u>」 제11조에 따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u>」 - ----- ----- ----- -- 라. 「<u>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u>」 - ----- ----- ----- ----- ----- ----- 마. 「<u>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u>」 - ----- -----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	---	---

른 매장유산의 발
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발굴된 매장유
산의 보존조치 지
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보
전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무형
유산법”이라 한
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법
제 12 조 제 1 항
및 제13조제1
항에 따른 국
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
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
의 해제

나. 무형유산법
제17조, 제18조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가. 「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
률」-----

나. 「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 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 보유자 및 전 승교육사의 인 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 제	흥에 관한 법 률」----- ----- ----- ----- ----- ----- ----- ----- ----- -----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하 이 호에서 “문 화 유 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사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 ----- ----- ----- ----- ----- ----- -----
	가.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 보, 사적 및 국 가민속문화유 산(이하 “국가 지정문화유산” 이라 한다)의	가.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 ----- ----- ----- ----- ----- ----- ----- ----- ----- -----

	<u>지정 및 같은</u>	-----
	<u>법 제31조에</u>	-----
	<u>따른 그 지정</u>	-----
	<u>의 해제</u>	-----
	<u>나. 문화유산법</u>	<u>나. 「문화유산</u>
	<u>제27조에 따른</u>	<u>의 보존 및 활</u>
	<u>보호물 또는</u>	<u>용에 관한 법</u>
	<u>보호구역의 지</u>	<u>률」</u> -----
	<u>정 및 조정과</u>	-----
	<u>같은 법 제31</u>	-----
	<u>조에 따른 보</u>	-----
	<u>호물 또는 보</u>	-----
	<u>호구역의 지정</u>	-----
	<u>해제나 그 범</u>	-----
	<u>위의 조정</u>	-----
	<u>다. 문화유산법</u>	<u>다. 「문화유산</u>
	<u>제39조에 따른</u>	<u>의 보존 및 활</u>
	<u>국가지정문화</u>	<u>용에 관한 법</u>
	<u>유산(사적은</u>	<u>률」</u> -----
	<u>제외한다)의</u>	-----
	<u>국외 반출 허</u>	-----
	<u>가 및 반출 기</u>	-----
	<u>간의 연장 허</u>	-----
	<u>가</u>	---
<u>6. 「세계유산의 보</u>		<u>7. -----</u>
<u>존·관리 및 활용</u>		-----

	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에 따른 세	제10조-----
	계유산의 등재 신	-----
	청, 같은 법 제10	-----
	조에 따른 세계유	-----
	산지구의 지정 또	-----
	는 변경 및 같은	-----
	법 제11조의4에	-----
	따른 세계유산영	-----
	향평가서의 검토	-----
	에 관한 사항	-----
7.	「자연유산의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관한 법률」-----
	하 이 호에서 “자	-----
	연 유 산 법” 이 라	-----
	한다)에 따른 다	-----
	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연유산법	가. 「자연유산
	제11조 및 제1	의 보존 및 활
	2조에 따른 천	용에 관한 법
	연기념물(같은	률」-----
	법 제2조제2호	-----
	에 따른 천연	-----
	기념물을 말한	-----
	다. 이하 같다)	-----

	<u>및 명승(같은</u> <u>법 제2조제3호</u> <u>에 따른 명승</u> <u>을 말한다. 이</u> <u>하 같다)의 지</u> <u>정과 같은 법</u> <u>제15조에 따른</u> <u>그 지정의 해</u> <u>제</u>	----- ----- ----- ----- ----- ----- ----- --
	<u>나. 자연유산법</u> <u>제 13 조 제 1 항</u> <u>및 제2항에 따</u> <u>른 보호물 및</u> <u>보호구역의 지</u> <u>정 및 조정과</u> <u>같은 조 제3항</u> <u>및 제4항에 따</u> <u>른 보호물 또</u> <u>는 보호구역의</u> <u>지정 해제나</u> <u>조정</u>	<u>나. 「자연유산</u> <u>의 보존 및 활</u> <u>용에 관한 법</u> <u>률」</u>----- ----- ----- ----- ----- ----- ----- ---
	<u>다. 자연유산법</u> <u>제20조에 따른</u> <u>천연기념물의</u> <u>국외 반출 허</u> <u>가, 반출 기간</u>	<u>다. 「자연유산</u> <u>의 보존 및 활</u> <u>용에 관한 법</u> <u>률」</u>----- -----

	<u>의 연장 허가</u>	-----
	<u>및 수출의 허</u>	-----
	<u>가</u>	--
8. 다음 각 목의 사		9. (개정안 제8호와
<u>항 중 국가유산청</u>		같음)
<u>장이 중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u>가. 국가지정문화</u>		
<u>유산, 천연기념</u>		
<u>물 및 명승의</u>		
<u>역사문화 환경</u>		
<u>보호에 관한</u>		
<u>사항</u>		
<u>나. 국가등록문화</u>		
<u>유산, 국가지정</u>		
<u>문화유산, 천연</u>		
<u>기념물 및 명</u>		
<u>승의 현상변경</u>		
<u>행위에 관한</u>		
<u>사항</u>		
<u>다. 국가등록문화</u>		
<u>유산, 국가지정</u>		
<u>문화유산, 천연</u>		
<u>기념물 및 명</u>		
<u>승의 보존·관</u>		
<u>리에 관한 전</u>		

	<u>문적 또는 기</u> <u>술적 사항</u> <u>9. 그 밖에 다른 법</u> <u>령에 따른 국가유</u> <u>산위원회의 조사</u> <u>· 심의 사항 및 국</u> <u>가유산의 보존·</u> <u>관리 및 활용 등에</u> <u>관하여 국가유산</u> <u>청장이 심의에 부</u> <u>치는 사항</u>	<u>10.</u> (개정안 제9호 와 같음)
--	---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506
----------	-------

제출연월일 : 2025. 11. 24.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2)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나누어 조사·심의함으로써 조사·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

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를 둔.
- 2)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호를 신설하고 수정안 제9조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제2호 신설 및 같은 조 제7호).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된 법률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3호·제5호·제6호·제8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
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
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
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의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도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다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다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율”을 “구역율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u> <u>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u> <u>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u> <u>·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u> <u>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u> <u>“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 1. <u>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u> <u>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u> <u>항</u> 2. <u>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u> <u>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u> <u>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u> <u>한 사항</u> 3.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u> <u>활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u> <u>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6 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u>국가등록문화유산(같</u> <u>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u> <u>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u>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
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
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
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
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
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
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
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
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
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
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
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
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
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
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
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
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
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
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
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
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의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

<신 설>

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
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
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
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
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
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
항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
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

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생략)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가 따로 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③ <u>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u> 1. <u>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u> 2. <u>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u> 3. <u>국가무형유산의 지정</u>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시·도지사</u>----- ----- -----.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u>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

공무원으로 본다.